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50873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9. 10. 11.(피고 B, C) 2019. 10. 25.(피고 A)

판결 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728,345원 및 그 중 96,946,059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6. 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B 사이의 2018. 8. 3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8. 9. 3. 접수 제15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C 사이의 2018.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7. 16. 접수 제28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8. 8. 3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해 9. 3.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5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8. 7. 1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3항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280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18. 9.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2. 31.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96,946,05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 2,463,046원을 지출하였다. 또 피고 A이 마지막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날인 2018.11. 10.부터 원고의 대위변제 전일인 2018. 12. 3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319,240원이다.

마.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99,728,345원(= 대위변제금 96,946,059원 + 대지급금 2,463,046원 + 위약금 319,240원)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6,946,059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8. 12. 31.부터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9. 6. 5.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A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이 7,378,448,324원, 소극재산이 7,398,678,473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 C의 선의 항변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 A, B의 조부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문중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A 외 5인이 공유 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 A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는 피고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이나 위 계약체결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의 시가는 1,300만 원 이상으로 피고 B은 시가보다 저렴한 1천만 원에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한 점(피고 B은 시가가 8,641,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2014. 11. 24. 낙찰금액이고, 당시 감정평가금액은 12,344,557원이다), 피고 B은 피고A의 친동생으로 피고 A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1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 C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피고 A과 피고C가 작성한 것으로 작성일, 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고 A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기 도 하는 등 피고 A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A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영암군

임야 10432㎡

(공유자 지분 6분의 1 지분)

2. 경기도 안성시

대 1392㎡

3. 경기도 안성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799.64㎡(일반음식점)

1층 554.40㎡(일반음식점)

2층 518.14㎡(일반음식점)

(위 2, 3번 공유자 지분 10분의 8 지분)

